

- 덕송~상계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-  
덕릉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서

2015. 9.

남 양 주 시  
서 울 특 별 시

- 덕송~상계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-

## 덕릉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서

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을 연결하는 도로인 “덕송~상계간 광역도로” 구간 내 설치된 터널시설물(가칭:덕릉터널)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는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2010. 9. 16일자로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 체결한 『덕송~상계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시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서』 제2조제3항, 제4조제2항제2호,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8조(시설물 유지·관리에 관한 협약)에 따라 덕릉터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**비용부담**을 목적 **항목**에

제2조(유지관리 범위 및 업무분담) 이 협약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범위와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유지관리 범위는 “덕송~상계간 광역도로”내 덕릉터널로 도로터널의 연장은 1.84km(남양주시 1.27km, 서울특별시 0.57km)로 거리비율은 「남양주시 : 서울특별시 = 69% : 31%」이다.
- ② 업무분담은 『덕릉터널』 내 설치된 구조물, 포장, 전기·설비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해 남양주시가 유지·관리 업무를 전담하며, 비용부담을 제외한 유지관리상의 모든 책임은 남양주시가 진다.

제3조(비용부담) ① 덕릉터널의 유지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할 구역별로 터널구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가 분담하되 터널구간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남양주시가 부담한다.

②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지관리비 : 인건비, 전기요금, 상하수도 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일체
2. 시설보수비 :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용
3. 안전점검비 : 『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상 각종점검 및 진단 비용

제4조(비용청구 및 납부) ① 남양주시가 비용산출 내역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 개시 후 15일 이내 서울특별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서울특별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남양주시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때 이미 지급되어 집행된 잔액은 제외하며,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) ① 남양주시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반기별 소요예산 내역이 포함된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작성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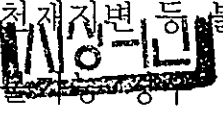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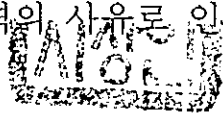
② 남양주시는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예산편성) ① 남양주시는 익년도 유지관리 분담비용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분담비용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산) ① 남양주시는 매 반기마다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앞의 반기에 집행된 유지관리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에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)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 
2. 국가시책 등의 변경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
3. 기타 사정으로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가 합의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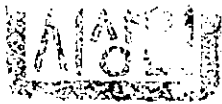
제9조(통보 의무) ① 남양주시는 안전진단, 점검 및 보수·보강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보고서, 설계도서 등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의 열람이나 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남양주시는 유지관리업무 수행상 협조를 요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약서 해석)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관하여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의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  
별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1조(효력의 발생) 본 협약의 효력은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서에  
날인하고 시설물의 인수·인계서에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며, 본 협약체결을  
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가 날인한 후  
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9. 16.



남양주시장

이석우



서울특별시장

박원순

